

2026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1차 사업화/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2026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19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구분	내용
1	사업 요약
사업명	2026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_사업화/마케팅 지원
지원내용	▶ 창업기업에 필요한 사업화/마케팅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必) ▶ 공고일 기준 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 ※ 관내 본사 및 공장 소재 기업(지점 및 지사 등 불가) ※ 제외대상: 요식업 및 소규모 서비스업(헬스장, 에스테틱, 미용실 등), 단순 도·소매업, 사치향락 업종 ※총사업자 등록내역 확인예정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지원금	최대 5백만원(기업 부담금 10%이상 매칭 必) ※후지급(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ybs.ypa.or.kr)
신청기간	공고일 ~ 2월 3일(화) 16:00까지
사업기간	선정 후 협약일부터 사업 완료(6월 30일)까지

2

사업 추진 절차

일정	절차	내용
1월~2월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서류 접수 ▸ 신청 자격 및 서류검토 ▸ 선정평가 ▸ 현장실사
3~6월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및 사업수행
7월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PCB, 목업, 금형 등) 제작 - 국내외 경영 및 기술 인증 획득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상표, 디자인 포함)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제작(카달로그, 홍보영상, 제품패키지 등)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p>※지원불가(온라인 마케팅, 판촉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p>

※ 분야별 중복신청(예시:사업화+마케팅)이 가능하나 최대 지원금은 5백만원을 넘지 못함

※ 예시에 없는 지원 세부내용은 담당자 확인 요망

□ 지원대상

- 관내 예비창업자
 - 선정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必
- 공고일 기준 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
 - 관내 본사 및 공장 소재기업(지점 및 지사 등 불가)
 - ※총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창업여부 확인예정

□ 지원제외대상

- 요식업 및 소규모 서비스업(헬스장, 에스테틱, 미용실 등)
- 단순 도·소매업 및 사치향락 업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과제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별첨 참고)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 (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모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5

사업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 3.(화) 16:00까지
 - ※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
 - ※ 어떠한 사유로든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및 부대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접수처: ybs.ypa.or.kr(용인기업지원시스템)
 - ※ 접수처 외 다른 방법을 통한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문의
 - 창업지원팀 031-890-7833(ehlee@ypa.or.kr)

6

선정평가

□ 평가방법

- 서류검토: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외부 평가위원 5명의 선정평가(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계산
- 선정기준: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순서로 선정 평가
 - 점수가 동일한 기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세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 기업)을 우선함
- 예비선정: 평점 70점 이상의 미선정된 기업에게 고득점 순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해당 공고 지원사업에 한함
- 추가선정: 선정기업 포기, 탈락, 지원금 감액 등의 사유로 지원금의 여분이 발생하면 예산에 맞춰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항목

- 선정평가 평가표

항목	세부내용	배점
지원의 필요성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20점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특허,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40점
기대효과	▶예상성과 (매출증대, 고용확대, 인지도 등) ▶파급효과 (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점
합 계		100점

- 선정평가 가감점 항목

구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점	입주계약서
	여성기업	+1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점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2점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점
		3천만원 이상	-3점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점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점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점
		300억원 미만~200억원	-3점
		200억원 미만~100억원	-2점
		100억원 미만~50억원	-1점

※ 가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

□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된 후에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 사전에 제작한 시제품으로 본 사업신청 불가, 위반시 선정 및 지원 취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 된 경우,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진흥원 내부 및 유관기관 등 확인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 될수 있음
 - ※ 사업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협약기간 동안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선정 및 지원취소
 - ※ 협약기간 내 용인이 아닌 관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

□ 지원금 집행

-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송금수수료 등은 제외(지원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건은 불인정 및 지급 불가
- 완료보고서 검토 후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의 항목과 금액은 불인정 및 지원금 지급불가)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간보고·완료보고·정산보고 등 기타 관련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지정한 대행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변경해야 함
 - ※ 사전승인없이 무단변경 후 사업수행하는 경우 지원금 불인정 (지급불가)등 제재조치 실시
- 진흥원 승인(통보)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 (예시)A제품의 목업 5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목업을 3개만 제작하거나 A제품의 목업이 아닌 PCB를 제작한 경우 사업의 무단변경에 해당하며 제재조치를 받을수 있음
- 사업결과물 및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실시
- 해당 사업 완료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가능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지침, 안내사항(지원사업 안내문, 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 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목록

구분	부대서류 목록표	발급처	비고
기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총사업자등록내역에 현재 영업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전부제출 <p>※예비창업자의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만 제출</p>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필수 제출
창업 기업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자등록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택스 홈페이지 개인로그인 (증명·등록·신청)-(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화면에서 총사업자등록내역(변경이력 포함) 선택하여 발급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필수 제출
매출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최근 1년간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시 손익계산서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필수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필수 제출
성실납부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u> 각 1부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정부24(1588-2188)	필수 제출
지원사업 관련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지원사업 관련 대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필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 각 1부 	대행업체 직인날인 및 세부 산출내역 포함 필수	필수 제출
기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공고문 내 붙임 서식	필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1부 	공고문 내 붙임 서식	필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1부 	공고문 내 붙임 서식	선택 제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input type="checkbox"/>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input type="checkbox"/>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년	전액 환수
포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내규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주의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 위배	<input type="checkbox"/>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 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주의 2회 = 경고 1회
- ※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창업 기준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겹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같은 경우를 말함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 업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 업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별첨2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전략산업팀
2		기계·설비 성능평가 및 기술지도 지원	
3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4	마케팅· 판로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판로지원팀
5		마케팅 지원	
6		해외지사화 지원	
7		해외물류비 지원	
8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9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10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1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인프라지원팀
12	사업화 지원	인증·지식재산 지원	사업화지원
13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14		시제품 제작 지원	
15		디지털 전환 지원	
16		기술가치평가 지원	
17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전략산업팀
18		반도체 소·부장 기술 이전 및 실증 지원	
19	사업화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인프라지원팀
2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2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2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IP-인증지원	
23	창업지원	민관 협력 AC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팀
24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25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26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2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년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